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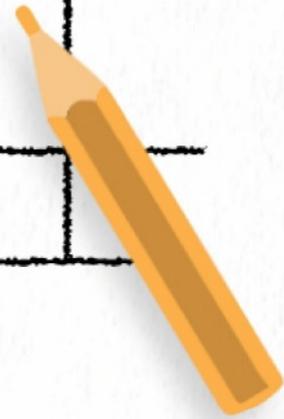


EBS  공인중개사 랜드하나

기본서

랜드하나 기본서 미리보기

기본서교재샘플 PDF



학습포인트

이 장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세법의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처음 공부할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세법 용어를 익히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분류에서는 목적세, 인세와 물세, 부가세 등을 숙지하고, 조세의 용어 정의에서는 징수방법과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1회독 2회독 3회독

제1절

조세의 개념 제 25회

1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의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책적·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본래의 목적이 재정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3. 조세는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는 비대가성 또는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정의 공공서비스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용료·수수료 등과는 구별된다.

4.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참고학습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	----------	----------	-------

과세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통상 4분설을 취한다. 즉, 과세가 가능하려면 먼저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과세물건이 귀속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

5.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조세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6.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세목

물 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 재산세 • 국세 : 상속세
분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제2절 조세의 분류 제20회, 제25회, 제30회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 세

(1) 의 의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한편,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세 목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 지방세

(1) 의 의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세 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 지방세 체계

구 분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도 세	시·군세	
보통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면허세 •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 레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목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심화학습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1.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1항).
2.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3항).
4. 광역시의 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1조).

핵심정리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분류

특별시·광역시·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구·도	등록면허세	
시·군·구	재산세 등	
특별시·광역시, 시·군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지방세 11개의 과세주체이다.

2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1. 직접세

(1) 의 의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실제 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2) 세 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간접세

(1) 의 의

조세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2) 세 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1) 의 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2) 세 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에 속한다.

2. 목적세

(1) 의 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다. 조세수입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 세 목

- ① 국 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②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심화학습

조세수입의 용도

구 분	세 목	사용목적	
국 세	교육세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자원 확보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및 에너지, 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특정자원분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특정시설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4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1. 인 세

(1) 의 의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조세부담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세 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물 세

(1) 의 의

사람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물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물세는 개개의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2) 세 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면적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이나 면적 또는 건수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가액(종가세)	→	% (정률세율)		
수량·면적 등(종량제)	→	금액(정액세율)		

1. 종가세

(1) 의 의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2) 세 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종량세

(1) 의 의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수량·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 되는 것을 말한다.

(2) 세 목

등록면허세 중 일부(말소등기·변경등기),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세율에 따른 분류

1. 비례세율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비례세율이라 한다. 즉, 세율 과 과세표준 간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1) 단일비례세율

언제나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로서 부가가치세(10%)가 이에 해당한다.

(2) 차등비례세율

가액과는 관계 없지만 취득원인과 과세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세율로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일부, 종합부동산세(법인이 주택분 납세의무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2.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금액이나 가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유하는 재산이나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을 더 적게 낸다. 때문에 누진세율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1)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주택분, 토지분(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세목별 세율 구조

구 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례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율	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	×	×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심화학습

세율 적용에 따른 분류

구 분	개 념	적용 세목
일정세율	법률에 의하여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제외), 종합부동산세, 각종 중과세율
표준세율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제한세율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최고세율로서 표준세율 채택시 최고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세율과 병행하여 채택하나, 표준세율 없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적용 세율 등
임의세율	법률에서 세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 상 없다.

7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1. 독립세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중에서 목적세, 부가세에 해당한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부가세에 해당한다

심화학습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

본 세	부가세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2. 지방교육세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단,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증설 : 위 지방교육세액의 3배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부가하여 과세한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	1.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을 제외)의 100분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양도소득세	1.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음 2.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1
법
률
기
본

핵심정리

지방소득세 종합정리

1. 과세주체 : 특·특·특·광, 시·군
2. 독립세
3. 소액 징수면제 적용○ : 세액 2천원 미만은 징수×. 즉, 2천원은 징수한다.
4.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5.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
6.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8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제25회 제30회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한다.

1. 부동산 취득시 조세

부동산 취득과정에 관련된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있다.

2. 부동산 보유·이용시 조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법인세(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등이 있다.

3. 부동산 양도시 조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있다.

심화학습

부동산활동에 따른 조세의 분류

구 분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보유·이용시	부동산 양도시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지방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국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증여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부동산임대업) •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 법인세 •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건설업)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인지세

심화학습

동시 부과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에 관련된 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동산 취득·보유시에만 관련된 조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보유·양도시에만 관련된 조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취득·양도시에만 관련된 조세	인지세

1회독 2회독 3회독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과정(납세자에 대한 조세를 확정시키는 절차)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이 있다.

1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8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9조)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② ①에 따라 조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②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③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④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국세기본법」 제17조)

- 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 ①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1회독 2회독 3회독

제4절 조세 용어의 정의 제27회, 제31회

1. 세 법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지방세에서 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지방세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지방세관계법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6.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가액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며,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8.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9.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0.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1.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심화학습

세목별 신고기한

1.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

- 상속의 경우 취득세의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예외 :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기 전까지

3. 종합부동산세(납세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 해당 연도 12월 15일

4.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기한 : 부동산 등 일반적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12. 세무공무원

(1) 지방세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국세

-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 ②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13.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지방세(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연대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납세고지서(국세: 납부고지서)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심화학습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15. 조세의 징수

(1) 신고납부(국세는 신고납세)

① 의 의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6호).

② 세 목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이 이에 해당하는 조세이다.
- ㉡ 국세 :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조세이다.

(2) 보통징수(국세는 정부부과과세)

① 의 의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 목

- ㉠ 지방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개인분 주민세 등
- ㉡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3)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

① 의 의

특별징수란 지방세(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 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일부, 법인세 일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16. 가산세

(1) 의 의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특 징

- ① 가산세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가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가산세 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여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3) 지방세의 가산세

취득세	① 일반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table border="1"> <tr> <td>무신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무신고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40% </td> </tr> <tr> <td>과소신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td> </tr> </table>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무신고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무신고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최대 75% 한도)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0.022%			
	② 증가산세 : 산출세액×8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p>① 일반가산세 : 취득세와 동일</p> <p>② 증가산세 : 적용 없음</p>			
재산세	<p>① 가산금만 적용</p> <p>② 가산세 적용 없음</p>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 경우)	<p>① 무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하지 않음</p> <p>②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p>			
지역자원시설세	<p>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취득세 일반가산세 와 동일</p> <p>② 소방분 : 재산세와 동일</p>			

(4) 국세의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p>①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의 (납부고지 후)납부지연가산세(3%+1일 0.022%) 적용</p> <p>②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고지 전)납부지연가산세(1일0.022%)</p>
양도소득세	<p>①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경우</p> <p>㉠ 신고불성실가산세</p> <p> a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p> <p> b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p> <p> c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p> <p>㉡ (납부고지 전)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p> <p>② 확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경우</p> <p> ㉠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p> <p> ㉡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심화학습

가산세의 종류

1. 국세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
- ② ① 외의 경우 : 100분의 20

부정행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의 ㉠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
 -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①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0.022%)
-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0.022%)
-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3)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3)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 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3)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8)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의 ① 및 ②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0)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②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